

[별표 10] <개정 2015.8.4.>

**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**(제59조제2항 관련)

강 습 과 목	강 습 시 간
수렵의 역사·문화	1시간
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	1시간
야생동물의 보호·관리에 관한 사항	1시간
수렵도구의 사용법,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	1시간 (실기 강습은 제외한다)

비고

1.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은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.
2. 강습과목 중 수렵도구의 사용법,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은 강습 시간 외에 1시간 이상의 실기 강습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.
3. 제1종 수렵면허를 받은 자가 제2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렵 강습을 면제할 수 있다.